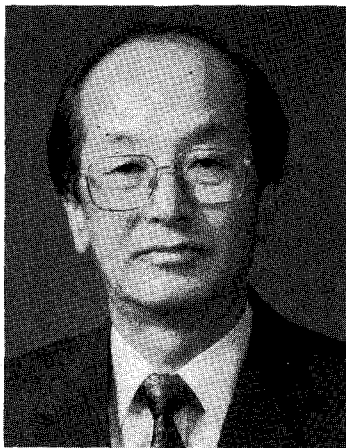


# 전문직의 공공성과 자강



**박노경**  
UN 글로벌 500 한국인회 회장

「**환** 경관리인」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다루는 업무내용이 현대사회의 최대문제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보전 분야란 점, 법에 의해 부여되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 의욕과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큰 성과와 보람을 누리게 된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관리인」의 입장에서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한다고 반론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사실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바깥에서 보면 일부만 보거나 비뚤어지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내부의 당사자들이 겪는 애로와 고충을 잘 알수가 없고 안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부정확한 것이기 마련이다. 「환경관리인」의 경우도 대체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한가지 예로 막강해 보이는 「환경관리인의 권한」 사항을 들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은 「환경관리인」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감독권과 이들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운영·관리권은 그 회사의 사장(사업자)도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인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사장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놓고 있으며, 사장도 이 법 규정에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겉으로만 보는한 가위 『환경관리인 만세!』의 법제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들 법 규정들을 그 회사 사장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환경관리인은 법에 정한대로 그 막강한 권한을 과연 소신껏 행사할 수가 있을까. 행사하다가 인사권자인 사장의 기휘(忌諱)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사장이 환경관리인의 권한 행사를 어떤 이유에서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인이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결착될 것인가. 오늘의 경제체제와 법질서에서 말한다면 「환경관리인」은 궁극적으로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고를 각오하고 소신껏 권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사권을 가진 사장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서 「적당한 선」에서 권한행사를 자제하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환경법상 막강해 보이는 환경관리인의 권한은 말하자면 환경보전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환경관리인(업무)」의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관리인의 권한은 실제에 있어 막강하지도 않고 때력의 가산 조건일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관리인」이란 전문직의 자리 매김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그들의 의욕이 풀려서도 안될 것이다. 사업장의 오염을 막음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전지구적인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환경관리인」업무의 숭고함은 그 권한의 강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60~70년대에 일본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미나마타병이나 이따이이따이병들은 특정한 오염원에서 배출한 중금속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국지적인 비극이었는데 반해, 오늘의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구 전체의 안전과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산성비,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 기후의 이상적 변조, 광범한 열대림과 야생생물의 감소, 사막화의 확대, 농작물의 감소……등 어느 대목을 놓고 봐도 도무지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오늘의 환경문제이다.

그래서 세계 정상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경고적 선언과 행동계획이 채택·선포되고, 여러가지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각국 정부가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NGO가 환경보전운동을 크게 활성화하고……. 그래도 하늘은 숨 막히게 답답하고 강물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와 수질 및 토양의 오염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크고 작은 사업장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이것은 사업장이 만들어내는 오염물질 배출구를 지키는 「환경관리인」들의 의욕과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이 된다.

「환경관리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직이 아니다. 같은 내용의 일을 반복적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직도 아니다. 소속 사업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의 독성을 기술적 창조적으로 줄이고 무해화하는 공공성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높은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전문직이 바로 「환경관리인」이다. 그러므로 환경관리인은 항상 탐구정신을 불태워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을 부단히 섭취하고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 정화방법의 연구·개발에 힘써야 할 입장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환경관리인」은 공공성을 띤 전문직답게 자신의 직무범위를 좀더 진취적으로 넓혀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약품의 투입이나 기계의 작동에만 매달리는 그런 소극적인 집무자세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오염물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에 까지 관심을 돌려, 원료·보조원료의 대체 가능성과 생산공정의 개선문제 등에도 의욕적으로 발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관리인」의 이러한 진취적 노력은 환경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그 소속 사업장의 경쟁력과 그 존폐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마련중인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국제규범

**여태까지 기업이 누려온  
일방적 환경수탈적  
「영리추구의 자유」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과  
앞으로의 기업은 지역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생명의  
안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환경까지 걱정해야 하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환경관리인」도  
이러한 중책의 실제적  
담당자로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을 수용·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장차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내시장에서도 환경보전의 인식이 높아진 소비자들과 발언권이 강해진 반공해 단체의 요구(환경정화)를 무시하는 기업은 판로의 유지·확대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장(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론, 사업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관점에서 「환경관리인」의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업자(사장)들이 인식해주었으면 한다.

이젠 세상이 크게 달라졌다. 여태까지 기업이 누려온 일방적 환경수탈적 「영리추구의 자유」는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오늘과 앞으로의 기업은 지역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생명의 안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환경까지 걱정해야 하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환경관리인」도 이러한 중책의 실제적 담당자로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